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22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양문석・부승찬・이재강

김우영 · 이광희 · 김동아

한정애 · 김문수 · 문진석

조계원 · 김현정 · 김윤덕

이기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선정"을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선정과 관련하여"를 "선정·선정배제 및 점검 내용·방법 등에"로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홍보매체가 정부기관등이 의뢰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정부광고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홍보매체가 시행한 정부광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부광고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매체 선정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홍보매체가 위법·부당한 정부광고를 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홍보매체 <u>선정</u>) ①·②	제6조(홍보매체 <u>선정 등</u>)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선정된 홍보매체가
	정부기관등이 의뢰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정부광고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홍보매체가 시행
	한 정부광고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u>선정과</u>	<u>⑤</u> <u>선정·</u>
<u>관련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	선정 배제 및 점검 내용・방법
령령으로 정한다.	<u>등에</u>
	,